



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(안)

2015. 03. 05.

도 시 국 (도시계획과)







CONTENTS

- I.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개요
- II. 상정사유 및 구역별 해제 내역
- Ⅲ. 해제구역에 대한 검토
- Ⅳ. 우리구 검토의견





I 신길재정비촉진지구 개요

신길재정비촉진지구 개요

재정비촉진지구 현황

① 우성5차아파트

- 규모: 20층, 용적률257%, 321세대

- 건축년도: 1993년

② 사러가시장

- 규모: 2층, 대지면적 8,708㎡

- 68년 7월 등록시장

-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

③ 신길삼성래미안

- 규모:20층, 용적률264%, 387세대

- 건축년도: 2001년

④ 신기 목련아파트

- 규모: 20층, 용적률207%, 215세대

- 건축년도: 2000년

⑤ 삼성래미안1단지

- 규모:22층, 용적률289%, 1,181세대

- 건축년도: 2000년

⑥ 푸른숲마을아파트

- 규모: 25층, 용적률234%, 공공용시설

- 건축년도: 1997년

⑦ 해군호텔

- 규모:5층, 용적률49%, 근린공공시설

- 건축년도: 1995년

⑧ 삼환아파트

- 규모: 25층, 용적률246%, 1,174세대

- 건축년도: 1997년



추진위 추진위 조합 구역 사업 착공 추진위 해산 시행인가 설립인가 해제 미구성 승인 1개 구역 2개 구역 1개 구역 6개 구역 2개구역 1개구역 3개 구역 (13)(6,10)(1) (3,5,8,9,12,14) (7,11)(15) (2,4,16)

⑨ 서울지방병무청

- 규모:2층, 연면적 3,804㎡

- 제1종일반주거, 공공업무시설

⑩ 한성아파트

- 규모: 22층, 용적률254%, 420세대

- 건축년도: 1997년

⑪ 살레시오 수녀원

- 규모:4층, 용적률 56%, 종교시설

- 건축년도: 2002년

⑫ 남서울아파트

- 규모: 5층, 518세대

- 건축년도: 1977년

⑬ 바다마을 아파트

- 규모:23층, 239%, 관사·공용건축물

- 건축년도: 2002년

♠ 영진시장(A동/B동)

- 신길1생활권 일대 지단 특별계획구역

규모: 주상복합15층

- 추진상황:건축허가준비

- 시장선정:2003.5.16

⑤ 대신시장

- 건축년도:1992년

- 추진상황:건축허가준비

- 시장선정:1998.1.23

구역 해제의 개요

해제의 배경 및 목적(신길15구역)

•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4. 12. 30.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.

신길재정비 촉진지구	위 치	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		2008. 3. 27.	•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			
	면적	1,469,460.8 m²		2013. 11. 15.	•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신청			
	위치	영등포구 신길동 276-1번지 일대	신길15 구 역	2014. 12. 17.	• 조합설립 추 진위원장 의견청취			
신 길	면 적	105,733 m²	추 진 경 위					
15구역	용도지역	제2 종 일반주거지역, 근린상업지역		2014. 12. 30.	•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			
	사업방식	주택재개발사업		2015.1.15.~2.16.	• 구역해제에 따른 주민 공람 ㆍ 공고 실시			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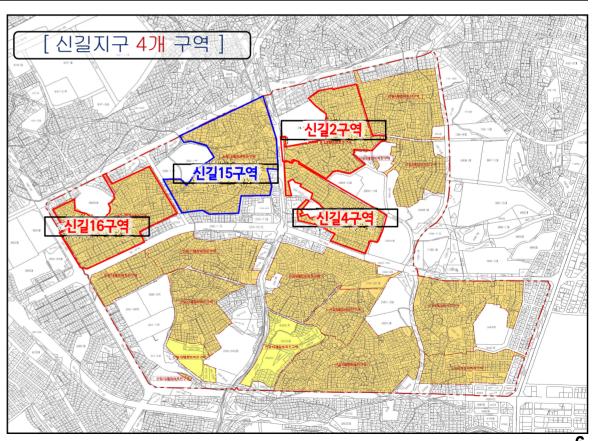
II 상정사유 및 구역별 해제 내역

상정사유 및 추진위원회 해산 취소·신청 현황

❖ 상정사유

-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4.12.30.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『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따른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,
-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 시설 등은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 제5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됨.
- ❖ 대상지구 및 구역
 - 구역해제
 - ▶ 신길 2구역(서울시고시 2014-422호, 2014.12.11.)
 - ▶ 신길 4구역(서울시고시 2014-422호, 2014.12.11.)
 - ► 신길16구역(서울시고시 2014-248호, 2014.7.3.)
 - 추진위원회 승인취소: 신길15구역
- ❖ 추위원회 해산 동의율 현황

구 분	구 역	계	해 산 신 청	해산 반대 및 무응답
토지 등 소유자	15구역	714명	364명	350명
동의율		100%	50.98%	49.02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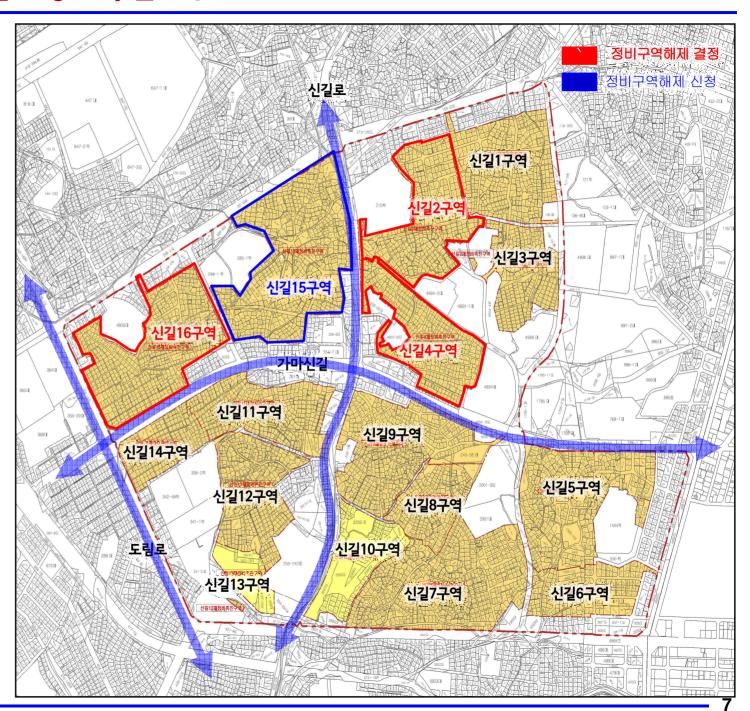
해제신청 현황 – 신길재정비촉진지구

신길16구역						
구역면적	80,272 m²					
추진단계	추진위(`08.4.7)					
해산동의율	50.84%(333명/655명)					
해산결정	2013. 12. 18.					
정비구역 해제	2014. 07. 03.					

신길2구역						
구역면적	61,971 m²					
추진단계	추진위(`08.6.12)					
해산동의율	51.48%(242명/470명)					
해산결정	2014. 03. 11.					
정비구역 해제	2014. 12. 11.					

신길4구역					
구역면적	52,112 m²				
추진단계	추진위(`08.04.1)				
해산동의율	50.95%(213명/418명)				
해산결정	2014. 05. 07.				
정비구역 해제	2014. 12. 11.				

신길15구역						
구역면적	105,733 m²					
추진단계	추진위(`08.03.27.)					
해산동의율	50.98%(364명/714명)					
해산결정	2014. 12. 30.					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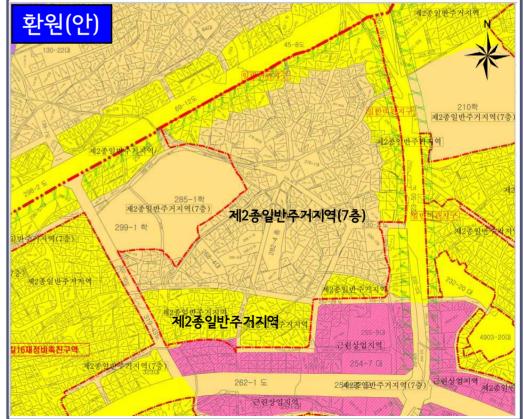


Ⅲ 해제구역에 대한 검토

용도지역 환원 결정에 관한 사항 –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

٦	н		면 적 (m²)		비율	HH거나O			
T	분	기 정	변 경	환 원	(%)	변경사유			
합 계		105,733		105,733	100			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	-	증) 69,744	69,744	66.0	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(정비구역등			
제2종일반주거지역		105,585	감) 69,744	35,841	33.9	해제) 제5항에 의하여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			
제3종일빈	<u></u> 추거지역	148	_	148	0.1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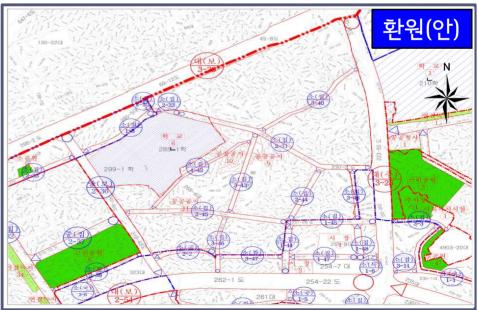




도시계획시설 환원 및 폐지 결정에 관한 사항 –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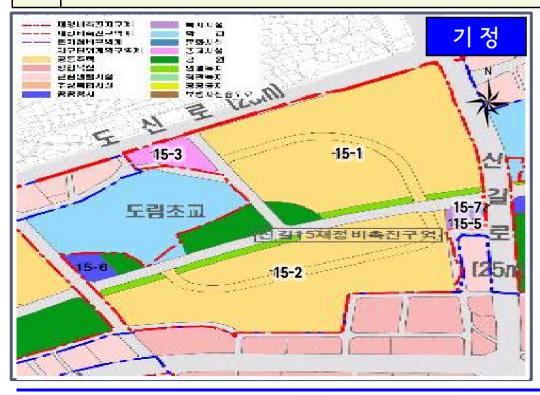
7 8		비율	비고			
구 분	기 정	변 경	환 원	(%)	,—	
구역면적	105,733	감)105,733	0		구역 해제	
소 계	42,110	감)10,921	31,189			
도 로	11,092	감) 116	10,976		환원	
공 원	5,655	감) 5,655	0		폐지	
녹 지	3,395	감) 3,395	0		폐지	
공공공지		증) 1,690	1,690		환원	
학 교	19,063	감) 540	18,523		환원	
공공청사	1,724	감)1,724	0		폐지	
사회복지시설	1,181	감)1,181	0		폐지	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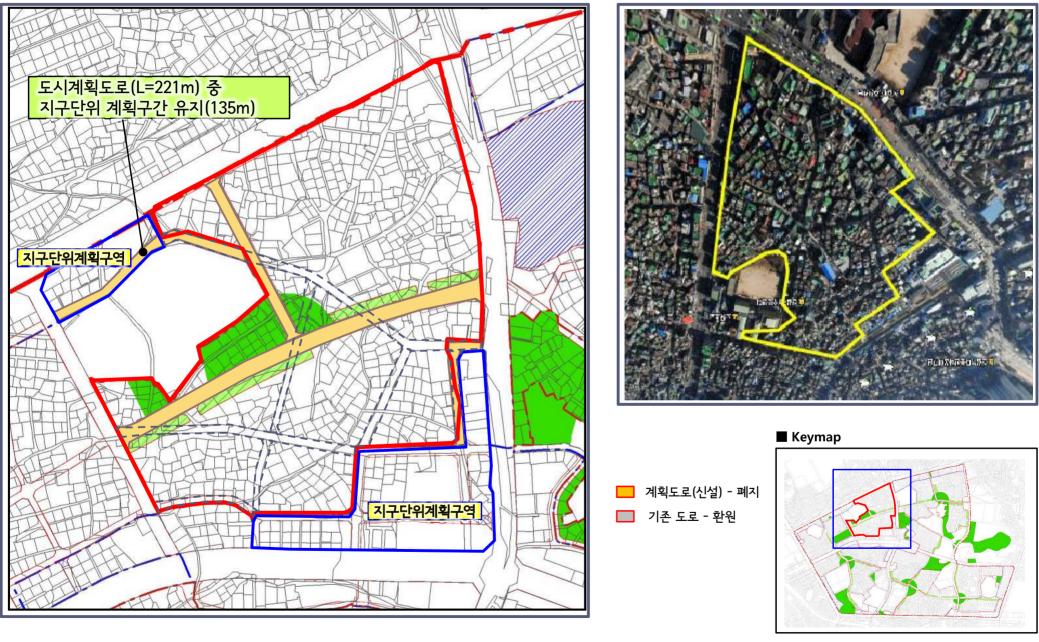
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역(신길15재정비촉진구역)

7 8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연면적	ス디오드 건페오(oc.)	7년 파티 오 (o/s)	요 건 로 (0/.)	평 균층 수/	건립세대수			정비	예정구역지정일
구분	명칭	면적(㎡)	(m²)	주된용 도	건폐 <u>율</u> (%)	용 적률(%)	최고 층 수	계	분양	임대	유형	(고시번호)
	15-1	41,591	100 500	공동 주택 및	15 05	220 62	22/34	1 640	1 252	297		
	15-2	37,923	182,588	부대복지시설	15.85	229.63	22/34	1,649	1,352	297		
	15-3	2,710	5,420이하	종교시설	60%이하	200%이하	-					'07 11 00
당초	15-5	1,181	2,362이하	노유자시설	60%이하	200%이하	-	-	-	_	전면	'07.11.29. 서고시2007-445
	15-6	1,561	3,122이하	공공업무시설 (동주민센터)	60%이하	200%이하	ı	ı	ı	I		12 12007 110
	15-7	163	326이하	제1 <mark>종</mark> 근린생활 시설(파출소)	60%이하	200%이하	1					
변경	구역해제에 따른 정비계획 폐지	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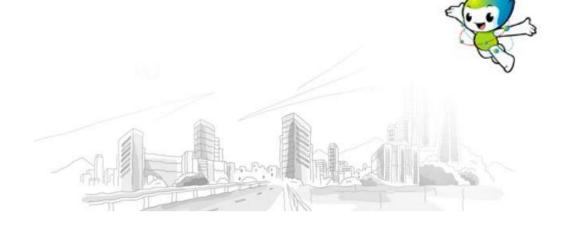




해제에 따른 도로기능 검토 –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







₩ 우리구 검토 의견

우리구 검토의견

검토의견

-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의 해당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4. 12. 30.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촉진구역 (정비구역) 해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제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, 조속한 정비구역의 해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서민주거 안정화 도모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



감사합니다